고효율 조명기기 지원제도 개정

한국전력공사 수요계획팀 mrnong@kepco.co.kr

"고" 마크 제품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제도가 개정됐다.
한전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내용중 기존 고마크 기술규격 인정승인 기준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정하고, 절전용량 총합이 6kW 이상 설치 또는 교체한 자에게 지급하던 것도 4kW 이상으로 낮췄다. 단, 학교나 군부대 등은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이 4kW 미만이라도 각 교육청이나 군부대에서 관내학교와 군부대를 일괄하여 단위공사건의 절전용량 총합이 4kW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당 지급단가는 형광등용 안정기 1등용 2,800원, 2등용 4,210원, 안정기내장형 램프 2,050원이며, 신청 지원금 지급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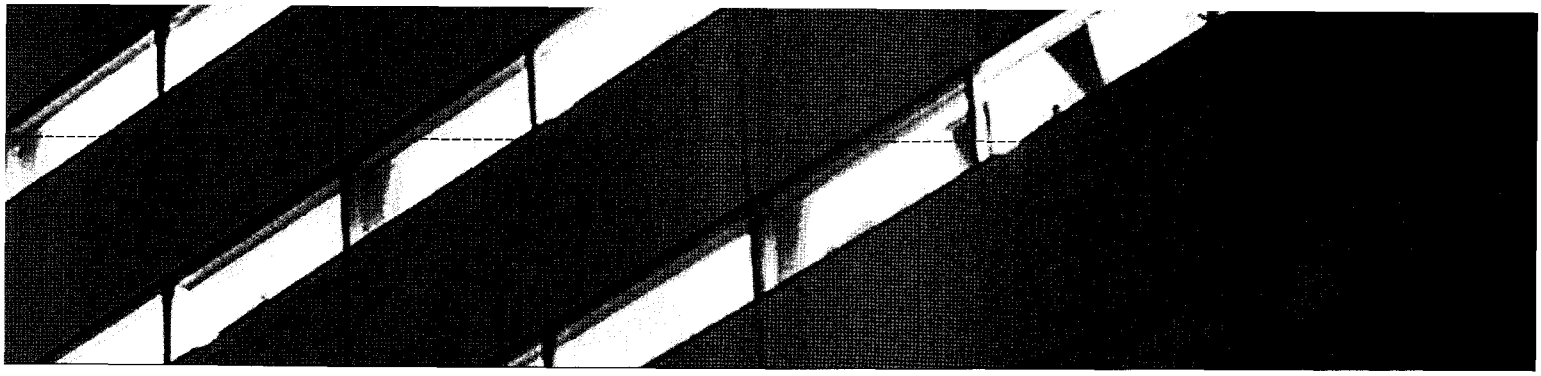

1. 적용대상

기존의 조명기기보다 단위전력량 발산 광속량이 증가되어 효율이 향상된 조명기기 중에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53호(2001. 12. 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중 전담기관이 지원대상기기로 인정한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와 안정기 내장형 램프를 말한다. 단, 이 지침의 개정 이전에 전담기관이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대상기기로 승인받은 제품은 고효율 조명기기로 인정한다.

2. 고효율 조명기기의 인정승인

가. 제조업체가 이 지침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기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사본)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인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은 "가"항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고효율 조명기기의 인정추천을 의뢰하며,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다. 고효율 조명기기로 인정한 기기에 대해서는 2001년 말 기준 주관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인정표시를 제품의 전면 상단에 부착토록 한다. 단, 인정표시는 전담기관이 기금으로 지원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확정하여 이를 변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3. 지정시험기관

가. 전담기관은 기금지원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시험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주관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담기관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단, 2001년 말까지 주관기관(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조명기술연구원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지정시험기관으로 간주한다.

4. 설치계획서 접수 및 현장확인

가. 이 지침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교체)공사 시행예정일 15일 전까지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은 제출받은 설치계획서 등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내용의 사실여부 및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신청서 접수 후 9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확인시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측정기기 등을 이용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현장확인 결과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2일 이내에 고효율 조명기기 지원금 지급예정 통보서로 신청자에게 지급예정금액을 안내한다.

마. 신청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신청내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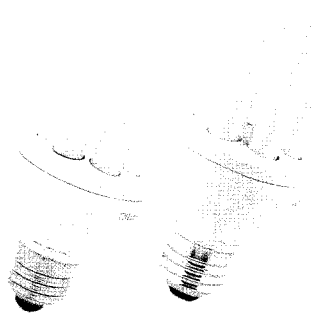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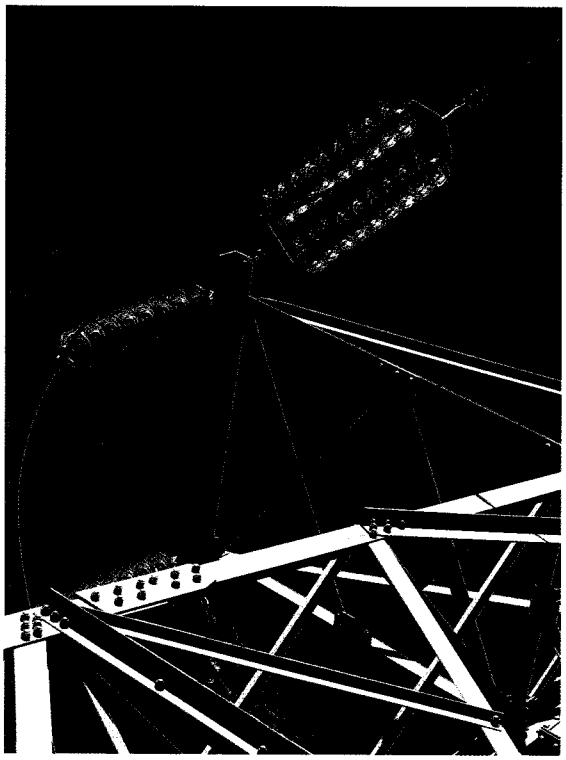

5. 지원금 산정 및 지급

가. 지원금 지급대상

(1)지원금은 제1항에서 정한 고효율 조명기기를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 총합이 4kW 이상을 설치 또는 교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기 설치된 전자식 안정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 등은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이 4kW 미만이라 하더라도 각 교육청이나 군부대에서 관내학교 및 군부대를 일괄하여 단위공사 건의 절전용량 총합이 4kW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4. 가"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원금 산정기준

(1)지원금은 기기종류별 설치수량에 기종별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기별 절전용량 및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다.

종류별	규격	절전용량(kW/개)	지급단가(원/개)
26mm 32W	220V 32W 2등용	0.036	4,210
형광램프용 안정기	220V 32W 1등용	0.018	2,800
안정기 내장형 램프	220V 용	0.045	2,050

(3)지급단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요청서 접수시점의 단가를 적용한다.

다. 지원금 지급신청

(1)"4. 가"항에 의해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한 자는 공사완료후, 고효율 조명기기 지원금 지급신청서, 공사 완료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준공도면, 계약서, 공사지시서, 내부품의서 사본 등)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주관기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사내용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고효율 조명기기로 인정받은 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지원금 지급대상기기의 수량을 별도로 명시한다.

(3)현장확인 결과, 실제 시공수량이 당초 계획서상의 수량과 다를 때에는 실제 시공수량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시공수량의 절전용량의 총합이 4kW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지원금 지급

(1)주관기관은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2)지원금은 신청자가 지정하는 신청자 명의의 예금구좌에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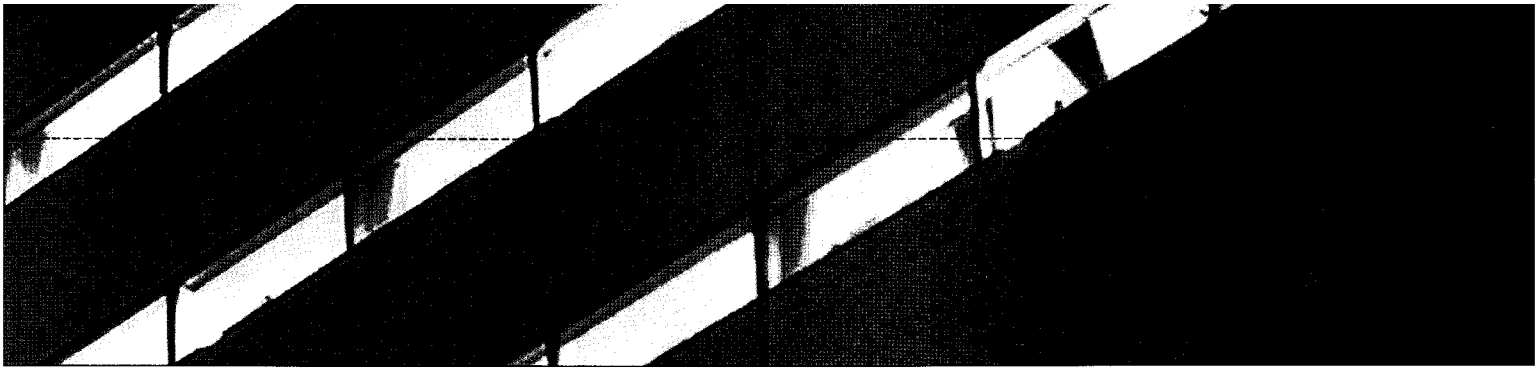

⑶지원금에 대한 제세금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6. 사후관리

주관기관은 고효율 조명기기의 성능유지 및 A/S 등을 위해 제조업체 및 대상기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전담기관이 인정한 고효율 조명기기에 대하여는 정기적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정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시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정기 사후관리는 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 등으로 인한 수시 사후관리는 전담기관이나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한다.

다. 정기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금에서 부담하며, 수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한다.

라.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조치 등은 주관기관이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보칙

가.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수요관리사업 추진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관은 수시로 수요관리사업 추진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또는 장관의 요청에 의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 부칙

가. 이 지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수행한 수요관리사업은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가. 이 지침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지침 제3장 제1절 규정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기의 규격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급단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수행한 수요관리사업은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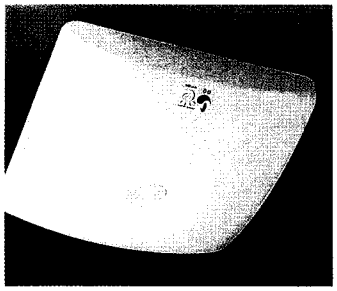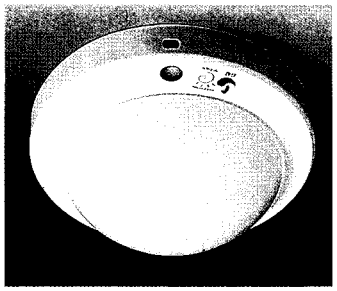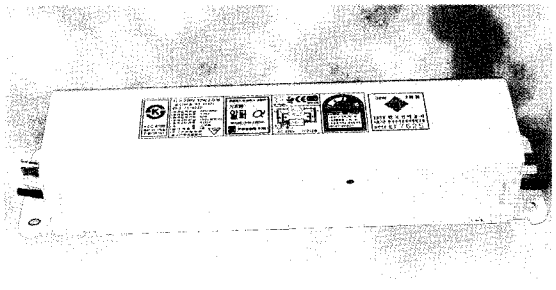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 변경 없이 개정된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지원품목의 기술기준 등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